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하 도 급 거 래 공 정 화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법 률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등이 일정한 하도급 거래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을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57호, 2022. 1. 11. 공포, 2022. 7.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심사청구 등(안 제6조의2)

- 1) 사업자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하면 공정위는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 2)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 등에 대한 서면 통지를 의무화하고 심사대상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함

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안 제6조의3)

- 1) 개정 법률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하도급거래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법률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위원들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충분한 의견제시와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소요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진행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진행 예정(2022. 4. 19. ~ 5. 28.)

3) 규제심사 진행 예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제6조의4로 하고,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 심사청구 등)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에게 해당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이 심사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업자등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의3(자문위원)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항 자문위원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심사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3항 위촉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의 심사내용 및 범위에 따라 자문료를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항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생략)	제6조의4(현행 제6조의2와 같음)
<신설>	제6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 심사 청구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업 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 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 심 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 사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 해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에게 해 당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이 심사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업자 등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 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 술할 수 있다.
<신설>	제6조의3(자문위원) ①공정거래위 원회는 법 제3조의2 제6항에 따 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

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심사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가 요청하면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
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위촉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
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
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의 심사내용 및 범위에
따라 자문료를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
다.

④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4589